
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-94호

세종시 청년창업기업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모집 공고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 관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내 창업한 청년 (예비)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화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일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세종시 청년 창업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

사업명 : 세종시 청년창업기업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

사업기간 : 2025. 09. 01. ~ 2025. 10. 02. * 조기마감 가능

사업대상

-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시인 청년 창업가

-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시이며, 관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창업가
 - * 청년의 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규정

지원내용

- 1회 최대 3시간,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

2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5. 09. 01. ~ 2025. 10. 02. * 조기마감 가능
- 접수방법 : 담당자 E-mail 접수 (kjh98@ccei.kr)

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정보	비고
필수	컨설팅신청서 1부	공고문 별첨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공고문 별첨	
해당	사업자등록증 1부	홈텍스 (hometax.go.kr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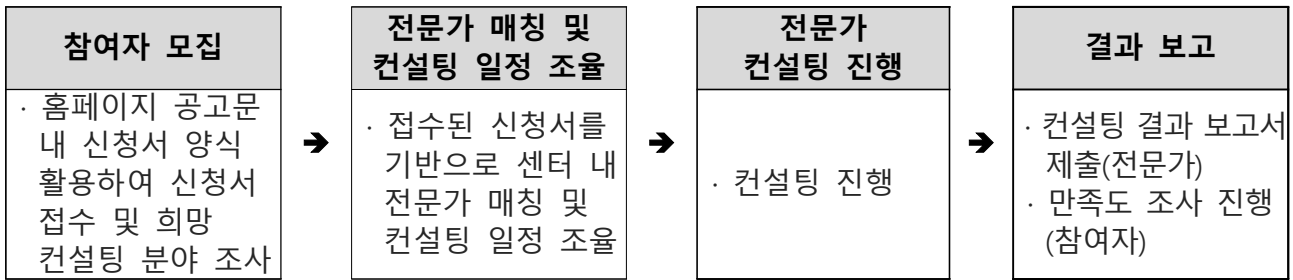
3 컨설팅 내용

- 컨설팅 분야 * 중복선택 가능
 - 세무·회계, 법률, 산업재산권, 인사·노무, 사업계획 등 창업관련 전 분야

순번	분야	세부분야
1	창업기획/비즈니스 모델	BM 수립, 아이템 고도화
2	브랜딩/마케팅	브랜딩 전략, 홍보·마케팅, 판로개척
3	기술 사업화/투자 유치	투자, 엑셀러레이팅
4	경영/법률·특허 인증	경영 전략, 특허·인증
5	기타	신청자가 직접 기재

컨설팅 운영

- 접수를 통해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 진행
- 신청자의 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적합한 내부 전문가 POOL 내 전문가 매칭 및 진행
- 사전 컨설팅 신청서 및 상담일지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컨설팅 관리 지원



4

유의사항

신청·선정 취소 및 유의사항

- ‘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’을 영위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* [참고 1] 참조
-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
- 전문가 매칭 후 불참·취소 통보 시 향후 신청 제한될 수 있음
-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에 대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

5

문의처

관련문의

-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사업담당자
전화문의 : 044-999-2162(1042) / 이메일 : kjh98@ccei.kr

참고 1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